2020학년도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성폭력·성평등 ·흡연·감염병 예방·미세먼지 대응 학부모교육자료

1. 성폭력 예방

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제작, 배포, 유통되는 형식의 범죄로,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혹은 몰래카메라 제작물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유포형, 제작형, 참여형, 소비형이 있음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나. 디지털 성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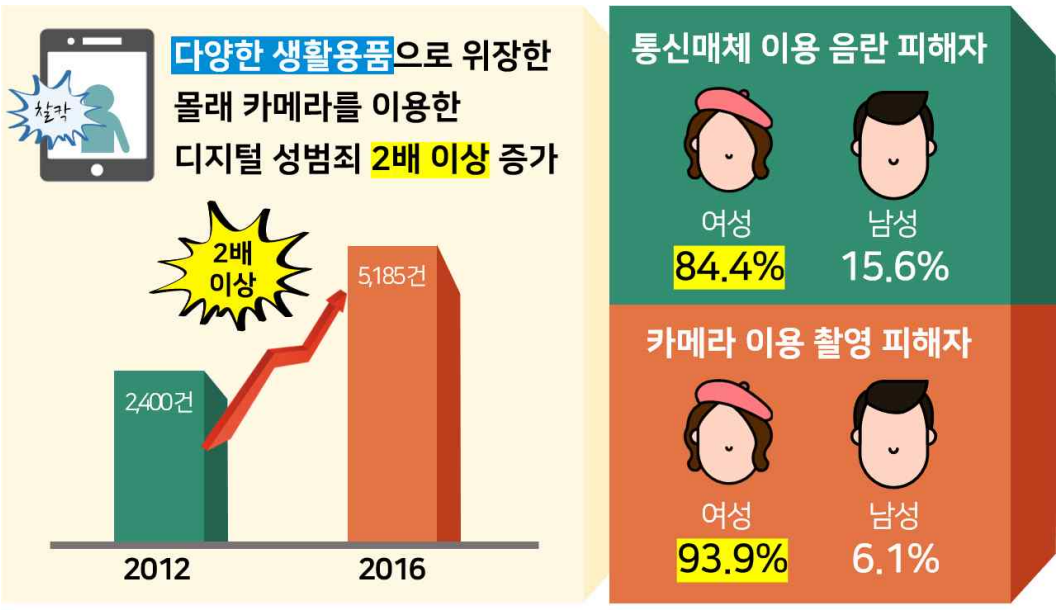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7. 9. 26)

한국성폭력상담소(2017),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다. 디지털 성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구조적 피해	개인적 피해
① 불특정 다수 대상 ② 디지털 테러의 속성 ③ 범죄의 악순환 ④ 불법 촬영의 교묘함	① 경제적 피해 ② 정신적 피해 ③ 피해자에 대한 편견

라. 전문가가 전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피해를 인지했다면 피해자이든 피해자가 아니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다.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한다. 삭제지원 사이트의 경우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요구하지만, 관련 지원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작업을 도와준다. 또 전문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마. 디지털 성범죄 Zero를 위한 정부 대책

바. 디지털 성범죄 전문기관 안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평일 10:00~17:00)
- 온라인게시판 (www.women1366.kr/stopds)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전화상담(☎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상담(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검색)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전화상담(☎1388, 24시간)
- 문자·카카오톡 상담(#1388)

▶ 전라북도 전문상담 기관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북	남원YWCA부설 성폭력 상담소(시청로)	625-1316	
	남원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요천로)	635-0712	
	호남 성폭력 상담소(전주)	286-1366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수사 지원)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치료지원)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063-1366	여성가족부

2. 성평등, 모두에게 즐거운 상상

가. 성 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여성의 일 따로, 남성의 일 따로?	성별 고정관념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적 대우
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50분, 여자는 4시간 18분이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이중적 기준은 사람들 각각의 특별한 능력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라는 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에서 주요 업무는 남성이 맡게 하는 성차별적 업무 배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하더라도 여성은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힘들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성폭력 피해를 둘러싼 성차별적 상황들

성차별적 문화	성차별적 법과 제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는 의심과 불신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폭력을 동조·지지하는 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문제의식 없이 더욱 확대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법과 정책, 수사기관이 때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많은 가해자들이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곤 합니다.

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

정부는 학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 허용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개개인이 인식 전환**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3. 청소년기 흡연 예방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중의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 청소년기 흡연의 영향

▶ 흡연 시작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
-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이르러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음

▶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 성인흡연자, 평생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

▶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은 편

▶ 흡연이 체중 조절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이 있으나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음

▶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음

▶ 니코틴 중독, 폐기능 및 폐성장 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질환 유발

▶ 비흡연 또래에 비해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남

▶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성인 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미 초기 성인기 흡연자에게 나타남

▶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이 많이 발견되며 약물 과다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킴

나.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이득

다. 금연 직후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효과

1) 입냄새가 나지 않고, 치아가 하얗고 건강해집니다.
2) 옷과 머리에 나쁜 냄새가 사라집니다.
3) 손가락의 착색이 사라집니다.
4) 음식 맛이 좋아지며, 후각이 돌아옵니다.
5)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게 됩니다.

4. 감염병 예방

가. 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종류와 등교중지

병명	초기 증상	등교중지 기간
수두	피부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인플루엔자 (독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무증상자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증상자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3일간** **- 증상 호전 시 담임 연락 후 등교** **-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기간연장 가능**

-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모든 감염병**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1
- **코로나19 유증상에만 해당**
  - **「등교중지 가정요양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제출**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상태일 때 관리

환자관리	· 되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 환자가 거주하는 방은 자주 환기를 시킴 ·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공간 사용 · 화장실을 공동사용할 때에는 사용 후 소독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유지 ·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일반 세제와 락스 희석 사용)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 분리하여 설거지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건강수칙 지킴
생활지도	· 외출은 되도록 자제 - 부득이 외출할 상황에는 부모가 동반하거나 허락한 경우에만 함 ·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 자제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외부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함 · 평소 등교 시와 동일한 생활습관 유지(기상과 취침시간 준수)

5. 미세먼지 대응

<table>
<tr><td>건강에
미치는 영향</td><td>·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은 심장 및 폐 관련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과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고 사망 증가와 연관이 있음
·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
· 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세포 노화 촉진
·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
</td></tr>
<tr><td>미세먼지
농도</td><td>· 미세먼지 예보등급
(단위: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예보 등급</th></tr><tr><th>좋음</th><th>보통</th><th>나쁨</th><th>매우 나쁨</th></tr><tr><td>미세먼지 (PM_{10})</td><td>0-30</td><td>31-80</td><td>81-150</td><td>≥ 151</td></tr><tr><td>초미세먼지($PM_{2.5}$)</td><td>0-15</td><td>16-35</td><td>36-75</td><td>≥ 76</td></tr></table>·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jihe.jeonbuk.go.kr)
→ 문자서비스 신청
-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td></tr>
<tr><td>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대
행동요령</td><td>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②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③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⑤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⑥ 환지,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⑦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td></tr>
<tr><td>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td><td>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 개정됨
나.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조건
1) 관련서류 제출 : 기저질환 보유자(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는 사전(학년 초 1회)에 전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미세먼지와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2) 고농도 미세먼지 시 :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통해 확인
3) 사전연락 :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등교시간 8시 30분 전까지)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에 해당</td></tr>
</table>

출처 : 디지털 성범죄(여성가족부)
성평등(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청소년기 흡연과 금연(국립암센터)
감염병 예방(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건강수칙 가이드북(질병관리본부)